

제수당지급규칙

제정 2009. 06. 24.

개정 2011. 01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진흥원의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지급범위) 진흥원 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연차휴가보상수당) ① 보수규정 제12조에 의한 연차휴가보상수당의 지급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연차휴가보상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에 지급한다.

제5조(시간외 근무수당) ①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로,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수당이다.

② 시간외 근무수당은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근무일수까지 근무시간을 집계·정산하여 별도의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. (단, 12월의 경우 잔여 15일분에 대하여 말일에 별도로 정산 지급할 수 있다)

제6조(직책수당) <조항삭제 2011. 1. 23.>

제7조(업무성과수당) <조항삭제 2011.1.23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1.1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.>

연차 수당

지급기준	지급대상	비 고
통상임금 $\times \frac{1}{209}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\text{잔여휴가일수}$	직원	

<별표 2.>

시간외 수당

지급기준	지급대상	비 고
통상임금 $\times \frac{1.5}{209} \times \text{연장근무 시간}$	직원 (보직자제외)	

※ 주 최대 12시간 월 48시간 이내

휴일근무 수당

지급기준	지급대상	비 고
통상임금 $\times \frac{1.5}{209} \times \text{휴일근로시간}$	직원 (보직자제외)	

<별표 3.> <표 삭제 2011.1.23.>